

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 내용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</p> <p>제1조 ~ 제5조 &lt;생략&gt;</p> <p>제6조 (서비스 이용 제한)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신설)</p> <p>제17조 (손해배상 및 면책사항)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③ <u>1항과</u> 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"은행"이 다음 각 호에 "고객"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"고객"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계좌번호, 계좌비밀번호 등 정보 누설                      2. 접근매체의 명의대여,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                     3. 제 3자가 권한 없이 "고객"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"서비스"를 이용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"고객"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</p> <p>제1조 ~ 제5조 &lt;좌동&gt;</p> <p>제6조 (서비스 이용 제한)                      ①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② "은행"은 제1항 각호에 의해 "서비스"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경우에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.</p> <p>제17조 (손해배상 및 면책사항)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② (좌동)                      ③ 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"은행"이 다음 각 호에 "고객"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"고객"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"고객"이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2. 제 3자가 권한 없이 "고객"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"서비스"를 이용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"고객"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3. "은행"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"고객"의 신원,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"서비스" 이용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"고객"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</p>	<p>서비스 이용제한사유 안내 조항 추가</p> <p>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반영</p>

금융기관 공동 제로페이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④ (생 략)</p> <p>제18조 ~ 제24조 &lt;생 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 &lt;생 략&gt;</p>	<p>4. “고객”이 제 3 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·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</p> <p>가. 누설·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</p> <p>나.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</p> <p>④ (좌 동)</p> <p>제18조 ~ 제24조 &lt;좌 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 &lt;좌 동&gt;</p>	
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